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034호
2. 발 의 자 : 송명화 의원외 19명
3. 발의일자 : 2022. 1. 19.
4. 회부일자 : 2022. 1. 25.

II. 제정이유

-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

III. 주요내용

1.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2. “학교숲”의 정의를 명시함(안 제2조)
3.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,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4조)
4. 자연성 확보, 접근성 확대 등의 학교숲 조성 기준을 규정함(안 제5

조)

5. 학교숲 활성화를 위해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(안 제7조)
6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7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
8. 학교숲의 조성, 관리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
9.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서울특별시,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4조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19일 송명화 의원 등 20명의 의원에게 의안번호 제3034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도시숲법’)」에 따르면, ‘학교숲’은 ‘생활숲¹⁾’의 한 종류로서 ‘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²⁾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의미합니다.

1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2. “생활숲”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

가. 마을숲: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

나. 경관숲: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전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

다. 학교숲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
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- 생활숲은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바,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주민복지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³⁾ 도시민들이 거주지 기반의 근거리 지역에서 숲 등의 자연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.
-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9일,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양·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 등(이하 ‘도시숲등’)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「도시숲법」을 제정한바 있습니다.
- 또한 서울시는 2021년 12월 30일,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이하 ‘도시숲 조례’)」를 제정하여 서울시 여건에 맞게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.
- 그러나 서울시 도시숲 조례에는 도시숲등의 하나인 ‘학교숲’이 서울시교육감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⁴⁾ 서울시장의 도시숲 조성·관리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바 별도의 ‘학교숲 조례’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이와 같이 동 조례안은 「도시숲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숲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따른 학교 구성원 및 도시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
나.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

3) 국립산림과학원(2021.4..1). 코로나 시대, 숲 이용 트렌드의 변화 및 시사점.

4)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(2021.12.17.). ‘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’ 검토보고서.

1) 조례안의 체계

-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을 규정하였고, 본칙 규정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학교숲의 기본계획 수립, 조성 기준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,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행·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에 있어서 「자치법규 입법실무」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2) 학교숲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교육감이 학교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·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숲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숲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,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3년부터 ‘에코스쿨⁵⁾ 조성 추진계획’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총 403개교에 학교숲 등을 조성하여 왔습니다.

[표-1] 서울시 에코스쿨 조성 현황

| 구 분 | 계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개 교 수 | 403 | 23 | 19 | 39 | 68 | 56 | 67 | 56 | 46 | 29 |
| 조성면적(m ²) | 282,659 | 19,355 | 13,900 | 26,940 | 50,365 | 37,213 | 46,683 | 38,427 | 27,260 | 22,516 |
| 사업비(백만원) | 53,359 | 2,757 | 2,086 | 4,210 | 8,692 | 7,699 | 9,245 | 7,700 | 6,050 | 4,920 |

5) 서울시내 초·중고교에 학교숲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

- 그러나 동 계획은 학교숲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숲 조성 대상, 규모, 사업비 등에 대한 계획만 포함되어 있을 뿐, 학교숲 조성 이후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,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학교숲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·관리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 -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숲 정책을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조성한 학교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숲 조성 및 활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 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502, 2022.1.28.).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